



제 4 2 8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검 토 보 고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2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6
3. 사업	8
4. 임원	11
5.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14
6. 준용	16
7. 부칙	18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의견	20
2.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황	21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안규백의원 등 13인

나. 제 출 일: 2024. 12. 02.

다. 회 부 일: 2024. 12. 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소관 법률의 부재로 인한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인력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주관,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 다. 기념사업회에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도록 함(안 제6조).
- 라.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0조 및 제12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3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는 법인 신설을 통해 동 기념사업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로서, 신규 법인의 신설(법인격·설립절차 및 정관·사업 등) 및 조직(임원 및 이사회, 사무처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법인 지원 근거(보조금 및 출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인 재정에 관한 규율(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 기타 사항(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준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상기 조문 체계는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등의 법률과 유사한 구조임.

[제 정 안 의 구 성]

제1조(목적)	제12조(사무처)
제2조(법인격)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제3조(설립)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정관)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5조(사업)	제16조(회계연도)
제6조(임원)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7조(임원의 임기)	제18조(결산보고)
제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지도·감독)
제10조(이사회)	제21조(준용)
제11조(이사회 기능)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관한 경과조치)

2. 총괄적 검토

가. 개요

- ‘세종대왕기념사업회’¹⁾(이하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기념관의 운영, 관리, 세종대왕 관련 문헌 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기념사업회는 사무국, 세종대왕기념관, 연구부서, 부설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수는 23명임.
- 그러나 현재 기념사업회는 소관 법률의 부재로 인한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제정안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기념사업회는 회원간 자율 결성된 민간 사단법인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수법인²⁾ 지위 부여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형성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2) 특수법인이란 「민법」,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됨.

현재 동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미납하고 무허가 건물
물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역시 기존 세종대왕 관련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반발 우려가 있고, 특정 사단법인에게 특별법을 통한 지
위 부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 따라서 제정안은 기념사업회의 지속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효과 및 개별법 제정을 통한 특정 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특정 기념사업회를 법률로써 특수법인화하여 지원하는
입법례는 「전쟁기념사업회법」(1988.12.31. 제정), 「민중화운동기
념사업회법」(2001.7.24. 제정) 등 2개 법률임.

3. 사업

가. 제정안 요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소관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나. 제정안 조문

제5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주관
3. 세종대왕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홍보·연구 및 전산화
4.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5. 세종대왕의 추모와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다. 검토사항

- 제정안 제5조는 기념사업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주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상기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와 같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안 제5조제1호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 세종

대왕기념사업회는 부지내에 세종대왕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어, ‘세종대왕종합기념관’ 신규 건립 필요성이 낮고, 현재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산하 ‘세종대왕역사문화관’(경기도 여주시 소재)이 운영 중으로, 동 역사문화관은 세종의 영릉과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자료를 한글·과학·음악분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어 세종대왕기념관과 기능이 중복되며 유사 성격의 문화시설 추가건립 명분이 부족함.

- 안 제5조제2호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주관과 관련하여, 최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24.11.26.)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은 2025년부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주관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동 기념일을 민간기관인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또한, 안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청 및 관련 민간단체 등도 추진하는 업무로서 고유업무로 보기 어렵고, 동 사업을 법률을 통해 독점적으로 위탁할 경우 기존 사업을 수행해 온 다른 민간단체의 반발 및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안 제5조 제6호 및 제7호 등의 사업은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 기념사업회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등 기관 자체 사업으로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해야 할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따라서 기념사업회 주요 사업의 필요성,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 사업자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 추진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임원

가. 제정안 요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 직무 등에 대해 규정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제정안 조문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다. 검토사항

- 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사업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구성과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장 및 감사를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있는 사단법인이므로 「민법」 및 개별 법령이 있는 유사 사단법인 사례를 따라 주요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제정안에 회원 및 총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총회는 사단법인에서 「민법」 3) 상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필수기관임.
 - 한편, 제정안은 제21조(준용)에서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여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기념사업회의 임원 임면 등 구성에 관한 규정 및 준용 조항은 신설 법인의 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결정될 사항으로 보임.

3)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참고로 특수법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회원이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원이 없는 재단법인 (전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경우에는 회장, 이사장 임면을 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2조(본부 임원)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2조(본부 임원)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달까지 재임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5.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가. 제정안 요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근거 마련
(안 제14조)

나. 제정안 조문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제정안 제14조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 상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특정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타 기관·법인·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전쟁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의 법률에서 각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규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필요성 및 형평성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6. 준용

가. 제정안 요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준용 규정 명시(안 제21조)

나. 제정안 조문

제21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검토사항

- 제정안은 기념사업회가 준용해야 할 규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다만, 「전쟁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의 법률은 각 기념사업회를 재단법인으로 보아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전쟁기념사업회법」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임.

- 따라서 동 기념사업회가 「민법」 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설 법인의 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부칙

가. 제정안 요지

-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기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나. 제정안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회장은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회장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기념사업회의 임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제정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운영 중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정안에 따른 정관작성 및 인가, 설립등기, 기존 법인의 해산 및 권리·의무·재산관계 승계,

현행 회장의 임기 유지, 임원 임기 기산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부칙 제2조제3항은 새로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의 기념사업회를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기념사업회는 회원이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동 부칙이 민법 제77조(해산사유) 및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⁴⁾, 현행 정관 제33조(해산)⁵⁾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부칙 제2조제5항은 현행 기념사업회 회장 등 임원의 임기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등은 이미 임기(2018.6.24.까지)가 종료된 상황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 부칙에 현 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설립등기 이후에는 종료됨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0

4)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관」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1

관계 부처 의견

부처명	주요 의견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신중검토 ○ 공유재산 사용료는 유상 사용이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을 허용 *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타 기관·법인·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법률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수용곤란 ○ 세종대왕 기념사업이 여러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업 전반을 특정 법인(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법률을 통해 독점적으로 위탁할 경우, 기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타 민간단체 반발 및 형평성 논란 우려 *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 한글주간 운영 등 ○ 해당 법인은 현재 수입 감소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변상 및 무허가 건물 사용 등 법적 문제 지속 중으로, 법적 책임성이 부족한 단체에 특별법을 통한 법적 지위 및 독점적 권한 부여는 부적절

참고 2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황

□ 사단법인 현황

- (명칭)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
- (설립허가) 1957.5.14.(허가번호: 문화 제1638호, 창립일 1956.10.9.)
- (조직) 사무국, 세종대왕기념관, 연구부서(3개), 부설위원회(1개)*
* 세종학술연구원, 한국학연구원, 한국글꼴개발연구원/한국전통예술위원회
- (임직원) 23명[임원 15명(회장 1, 부회장 3, 상무이사 등), 직원 8명(총무부 2, 연구부 6)]
※ 회원수: 120여 명
- (주요사업) 세종대왕 유물 등 수집·보관, 세종대왕 관련 문헌 간행 등

□ 세종대왕기념관 현황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7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약 2,480㎡
- (건립이력)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68년 10월 착공, '69년 중단. 이후 국민성금 등으로 '70년 준공, 개관 '73.10월

세종대왕기념관 건립 경위

박정희 대통령 민족문화센터 건립지시('66.1월) → '종합민족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세종대왕기념관 건립계획('66.1월) → 기공('68.10월) → 준공('70.11월) → 개관('73.10.9.)

* 총공사비: 122,957,958원(국고보조금 94,821,000원, 국민성금 28,136,958원)

**규모: 750평(지하1층~지상2층), 주요구성: 전시실, 연구실, 강의실, 사무실 등

- (운영주체)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운영내용) 세종대왕 관련 자료 전시 ※ 수악구조 개선을 위해 '93년부터 예식업 병행
 - (건축물) 미등기 건물/ 서울시 미래문화유산
 - 현재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없는 미등기 건물
 - 서울시 미래문화유산 지정(2017-025호)
 - 동대문구의 시설개보수 지원 (수장고 증축/구예산 114백만원 투입/'22년)
 - (토지) 국유지 무단점유 중으로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 중(총 1,212백만원 /'24.12월)
 - 미납 사용료(235백만원): '19년~'20년 동안 사용한 토지 사용료, 한국자산관리공사사 회수업무 위탁('21.12.8)
 -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977백만원): 국유지 무단점유('21.8.1이후)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
- ※사용료 미납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불허 통보('21.7.23/국어정책과)